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I.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383호
2. 제출자 : 서울특별시교육감
3. 제출일자 : 2022. 11. 1.
4. 회부일자 : 2022. 11. 3.

II. 제안이유

-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제출함

III. 주요내용

< 기금운용계획(안) 규모 >

(단위 :천원)

구 분	2023년도 계획(안)	2022년도 계획	증 감 액	비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	127,467,015	118,473,506	8,993,509	

IV. 참고사항

- 관련법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V.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김창범)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계획안은 2022년 11월 1일 서울특별시교육감에 의해 의안번호 제383호로 제출되어 2022년 11월 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을 위한 건립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2. 주요 검토의견

가. 기금총괄

-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설치·운용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설치된 것입니다.
- 당초 동 기금은 2016년에 조성되어 2020년 말까지 존속예정이었으나 2019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결과 이행에 따른 신청사 건립 사업규모 축소 및 연수원 기본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해 기금의 존속기한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되었습니다.
- 한편 2023년도 동 기금의 수입계획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329억 3천 9백만원과 예치금 회수 936억 9천 4백만원 그리고 이자수입 8억 3천 4백만원 등 총 1,274억 6천 7백만원이며,
지출계획은 기관운영(비용자성사업비) 378억 6백만원 및 예치금 896억 6천 1백만원 등 총 1,274억 6천 7백만원입니다.

[표-1] 기금수지 총괄

(단위: 천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수입항목	'23년 수입액 (A)	'22년 수입액 (B)	증 감 (C=A-B)	지출항목	'23년 지출액 (A)	'22년 지출액 (B)	증 감 (C=A-B)
합 계	127,467,015	118,473,506	8,993,509	합 계	127,467,015	118,473,506	8,993,509
교특회계 전입금	32,939,059	41,015,324	△8,076,265	기관운영 (비용자성 사업비)	37,806,314	24,779,390	13,026,924
기부금	-	-	-	용자성 사업비	-	-	-
용자금 회수	-	-	-	인력 운영비	-	-	-
예치금 회수	93,694,116	75,777,479	17,916,637	기본 경비	-	-	-
이자수입	833,840	1,680,703	△846,863	재무활동 (예치금)	89,660,701	93,694,116	△4,033,415
기타	-	-	-	기타	-	-	-

나. 수입계획

○ 2023년도 동 기금의 수입계획은 1,274억 6천 7백만원이며 이 중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은 329억 3천 9백만원으로, 이는 용산구 보광동 토지매각 비용 318억 4천 7백만원, 구로동 토지매각 비용 10억 1천 3백만원, 기타매각 비용 7천 8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표-2] 2023년도 서울시교육청 토지매각 및 징수 현황

(단위: 천원)

대상 기관명	소재지	지번	매각예정월	구분	회차	징수예정액
남부교육지원청	구로구 구로동	442-20 등 7필지	2023년 5월	일시납	-	1,013,458
동부교육지원청	동대문구 전농동	45-43	2008-04-28	분납	16/20	6,086
서울휘경초등학교	동대문구 휘경동	302-2	2017-07-07	분납	7/10	4,009
중부교육지원청	용산구 보광동	3-14 등 38필지	2023년 1월	일시납	-	31,847,118
서부교육지원청	마포구 신수동	371-28	2017-07-17	분납	7/10	59,406

(단위: 천원)

대상 기관명	소재지	지번	매각예정월	구분	회차	징수예정액
성북강북교육지원청	성북구 삼선동3가	50-50	2004-04-16	분납	20/20	2,631
성북강북교육지원청	성북구 삼선동3가	50-49,50-51	2004-04-16	분납	20/20	2,580
성북강북교육지원청	강북구 미아동	791-4809	2019-12-13	분납	4/5	3,771
전 체						32,939,059

- 용산구 보광동 토지매각 및 구로동 토지매각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따라 해당지역 재정비 사업조합에 토지를 매각하는 것으로, 용산구 보광동 토지매각은 2023년 1월, 구로동 토지매각은 2023년 5월에 매각될 예정인바,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부동산가격 하락 등의 상황을 면밀히 고려하여 토지매각의 지연 등으로 인해 수입계획이 변경되는 일이 없도록 토지 매각과 관련된 법적 절차 및 매각 협상 등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 한편 기타매각 비용 7천 8백만원은 마포구 신수동 등 6곳의 과거 토지 매각 대금을 최소 5회에서 최대 20회까지 분납하여 징수받는 금액으로,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은 그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시납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년 만기 정기에금 금리 수준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 할 수 있습니다¹⁾.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분납 징수의 경우 최근의 금리인상 여건을 반영하여 원금뿐만 아니라 잔금에 대해서도 적정수준이 이자 납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7조(매각대금의 납부) ①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은 그 전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꺼번에 내야 한다. 다만, 매각대금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에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일반재산 중 동산(動産)의 매각대금에 대하여는 제1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아울러 동 기금에서 2023년도 이후 소요될 사업비는 총 1,536억 1천 4백만원으로²⁾ 2023년도 말 조성액(896억 6천 1백만원) 기준으로 향후 약 600억원의 재원을 더 확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은 현재 불필요한 공유재산을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매각함으로써 부족한 기금 조성액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표-3] 2023년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수입계획

(단위: 천원)

장	관	항	목	'23년 수입액 (A)	'22년 수입액 (B)	증감 (C=A-B)
[50000]내부거래				32,939,059	41,015,324	△8,076,265
	[51000]전입금			32,939,059	41,015,324	△8,076,265
		[51100]전입금		32,939,059	41,015,324	△8,076,265
			[51102]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32,939,059	41,015,324	△8,076,265
[40000]기타				93,694,116	75,777,479	17,916,637
	[42000]예치금회수			93,694,116	75,777,479	17,916,637
		[42100]예치금회수		93,694,116	75,777,479	17,916,637
			[42101]예치금회수	93,694,116	75,777,479	17,916,637
[20000]자체수입				833,840	1,680,703	△846,863
	[24000]이자수입			833,840	1,680,703	△846,863
		[24100]이자수입		833,840	1,680,703	△846,863
			[24101]예금이자수입	833,840	1,680,703	△846,863
수입 합계				127,467,015	118,473,506	8,993,509

다. 지출계획

○ 2022년도 동 기금의 지출계획은 총 1,274억 6천 7백만원으로, 이는 신청사 건립을 위한 설계비, 시설비,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 등 건설비 378억 6백만원과 연수원건립 설계비 5천만원, 예치금 896억 6천 1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도 지출액 1,184억 7천 4백만원 보다 89억 9천 4백만원 증가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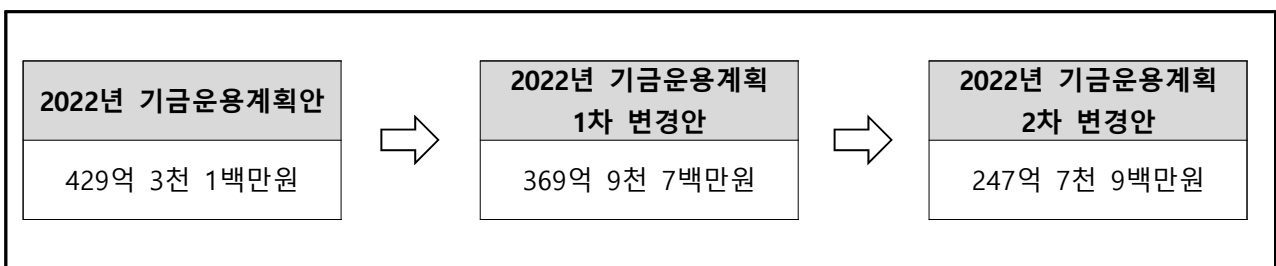
2) 총 사업비는 신청사 건립에 1,299억원, 연수원 건립에 337억 3천 6백만원 등 총 1,636억 3천 6백만원으로, 2022년도까지의 사업비 지출액 100억 2천 2백만원을 제외한 금액임.

○ 먼저 2023년도 신청사 건립을 위한 건설비³⁾는 총 377억 5천 6백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129억 7천 7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년도 신청사건립 건설비의 지출 운용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시교육청은 2022년 기금 운용계획안 수립 시, 신청사 건립 건설비로 429억 3천 1백만원을 편성하였으나

2022년 7월, 관급자재 수급 지연으로 인한 공사연기를 이유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여(1차) 이를 369억 9천 7백만원으로 감액하였고, 현재 이를 247억 7천 9백만원으로 추가 감액하기 위해 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시의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⁴⁾.

[표-4] 2022년 신청사건립 건설비 지출계획 변경 현황



○ 그러나 이와 같은 지출액 감액에도 불구하고 2022년도 2차 변경안 지출액 대비 2022년 11월 기준 지출액은 8억 1천 5백만원으로 집행률은 3.3%에 불과한바, 지출액의 대부분이 이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신청사건립을 위한 시설비,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4) 서울시교육청은 전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수립시 신청사 건립 건설비로 429억 3천 1백만원을 계상하였으나, 2022년도 연도 중 공사기간의 지연을 이유로 두 차례의 변경안을 제출하여 지출액을 기금운용계획안 수립시 보다 △42.3%(182억 2백만원)나 감액하여 247억 7천 9백만원으로 편성한 것임.

[표-5]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연도별 사업비 집행실적

(단위: 천원)

연도	계획대비 지출액 ⁵⁾ 집행실적		
	계획 ⁶⁾ A	지출액 B	집행률 (B/A*100)
2017	308,000	43,898	14.3%
2018	3,292,000	967,182	29.4%
2019	7,595,112	3,500,484	46.1%
2020	4,625,530	3,667,093	79.3%
2021	3,046,436	1,028,590	33.8%
2022	24,779,390	814,559	3.3%

○ 더욱이 현재 신청사건립 건설비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공사비의 경우 현재 2차 공사가 2022년 9월 6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계약되어 있어, 2023년도 건설비 지출액은 2023년도 하반기에야 본격적으로 지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차수	계약금액(원)	공사기간
총차	62,764,724,000	2022.01.01. ~ 2024.11.23.
1차	500,000,000	2022.01.01. ~ 2022. 09.05.
2차	13,425,500,000	2022.09.06. ~ 2023. 06.30.

○ 한편 건설자재 가격은 2022년에 정점에 이른 후, 2023년도부터는 다소 하락될 것으로 전망되나, 건설수주와 건설기성⁷⁾ 간의 시간차로 인해 2023년에도 상당 기간 높은 원자재가격이 지속될 가능성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망되는바⁸⁾,

서울시교육청이 신청사 건립 건설비를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으로 편성한 것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5) 지출액은 예치금 및 사고이월액 제외.

6) 당해 연도 최종 변경계획안 금액.

7) 건설업체의 시공실적을 금액으로 평가한 것으로, 물가변동분이 포함된 경상금액임.

8) 국회예산정책처(2022.10.5.). '2023년 및 중기 경제전망(III) [생산부문]'.

[표-6] 2023년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지출계획

(단위: 천원)

분야	부문	정책	단위	세부	사업내역	'23년 지출액 (A)	'22년 지출액 (B)	증감 (C=A-B)
					[050]교육	127,467,015	118,473,506	8,993,509
					[054]교육일반	37,806,314	24,779,390	13,026,924
					[02]기관운영	37,806,314	24,779,390	13,026,924
					[02]교육행정기관시설	37,806,314	24,779,390	13,026,924
					[01]기관시설유지관리	37,806,314	24,779,390	13,026,924
					신청사 건립	37,756,314	24,779,390	12,976,924
					설계비	13,784	13,784	-
					시설비	36,126,704	23,688,979	12,437,725
					감리비	1,471,000	1,016,582	454,418
					시설부대비	144,826	60,045	84,781
					연수원 건립	50,000	-	50,000
					설계비	50,000	-	50,000
					[03]재무활동	89,660,701	93,694,116	△4,033,415
					[05]예치금	89,660,701	93,694,116	△4,033,415
					[01]예치금	89,660,701	93,694,116	△4,033,415
					예치금	89,660,701	93,694,116	△4,033,415
					지출 합계	127,467,015	118,473,506	8,993,509

○ 다음으로 서울시교육청은 동 기금의 연수원 건립을 위한 타당성 용역비로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연수원 건립은 제주도에 부지를 매입 또는 임차하여 서울시 교직원을 위한 힐링연수원의 형태로 건립할 계획이었으나 2019년 사업 추진과정에서 중앙투자심사 부적정(사업계획 전면 재검토) 결과를 받으면서 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표-7] 2019년도 정기 2차 중앙투자심사 결과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5823(2019.10.1)]

사업명	결과	부대 의견
제주평화힐링 연수원 설립	부적정	사업계획 전면 재검토

- 이후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의 투자심사 부적정 결과에도 불구하고 당초 제주도에 추진 중이던 연수원 건립지를 평창으로 변경하는 등 연수원 건립 기본계획을 수정하였고(초등교육과-12603,2020.8.31.), 2021년 3월에 이와 관련된 타당성 조사 용역 등을 시행하는 것으로 2021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2020년도에 동 기금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실적이 전무했던 연수원의 추진 여부에 대해 많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사업재검토를 요구하였으나, 서울시교육청이 적극적인 연수원 건립 추진 의지를 표명함에 따라 2025년까지 존속기한을 연장해준 바 있습니다.

[표-8] 2021년도 기금 운용계획상 연수원 건립 추진 일정⁹⁾

추진 및 향후일정	추진내용
2021.1~2021.5.	타당성조사용역
2021.7~2021.12	재정투자심사(자체, 교육부), 공유재산심의회 및 관리계획 심의
2022.1~2022.3.	군관리계획 변경 및 토지매입, 디자인 컨셉트 개발 및 공간 구상에 대한 의견수렴
2022.1~2022.12	설계 공모 및 설계 용역
2023.2	건축인.허가
2023.7	공사 계약(입찰)
2023.9~2025.8	공사 착공 및 준공
2025.9~2025.10	운영 준비 및 개관

-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은 2021년도에도 연수원건립에 대한 타당성 용역조차 시작하지 못하였고, 2022년 3월부터 비용자성 사업비로 타당성 용역을 시행하고자 2022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5천만 원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2022년도에도 결국 타당성 용역을 시행하

9)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운용계획안」

지 못하였으며, 2022년 10월, 「2022년도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 운용계획 2차 변경안」을 제출하여 당초 타당성 용역비 5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 이와 같이 현재 연수원 건립기금은 2016년 기금 설치 이후 7년째 지출액이 0원이며, 제대로 된 지출계획 조차 세우지 못한 상황으로 서울시교육청의 연수원 건립의지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바, 2023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의 타당성 용역비 5천만원은 전액 삭감하고 동 사업에 대해서는 조례 개정을 비롯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표-9] 2022년 연수원 건립기금 지출 계획 변경안

(단위: 천원)

분야	부문	정책	단위	세부	세부항목	'22년 지출액 변경(A)	'22년 지출액 기정(B)	증감 (C=A-B)
					[050]교육	24,779,390	37,047,191	△12,267,801
					[054]교육일반	24,779,390	37,047,191	△12,267,801
					[02]기관운영관리	24,779,390	37,047,191	△12,267,801
					[02]교육행정기관시설	24,779,390	37,047,191	△12,267,801
					[01]본청시설관리(신청사건립)	24,779,390	36,997,191	△12,217,801
					설계비	13,784	13,784	-
					시설비	23,688,979	34,952,845	△11,263,866
					감리비	1,016,582	1,900,000	△883,418
					시설부대비	60,045	130,562	△70,517
					[03]직속기관시설관리(연수원건립)	-	50,000	△50,000
					설계비	-	50,000	△50,000
					[160]예비비	93,694,116	80,397,873	13,296,243
					[161]예비비	93,694,116	80,397,873	13,296,243
					[01]예비비및기타	93,694,116	80,397,873	13,296,243
					[01]예비비및기타	93,694,116	80,397,873	13,296,243
					[03]내부유보금	93,694,116	80,397,873	13,296,243
					예치금	93,694,116	80,397,873	13,296,243
					지출 합계	118,473,506	117,445,064	1,028,442

- 이상으로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법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 2021.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제15조(기금의 통합·폐지)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의 폐지 및 제정·개정 절차에 따라 이를 폐지하거나 다른 기금과 통합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설치된 기금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이의 폐지 또는 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기금 설치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
2. 기금 설치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3. 「지방재정법」에 따른 특별회계와 기금 간 또는 기금 상호간에 유사하거나 중복되게 설치된 경우
4. 그 밖에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기금의 폐지 또는 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 설치·운용 조례

[시행 2022.10.13.] [서울특별시조례 제8452호, 2022.10.13., 일부개정]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이하 "교육비특별회계"라 한다) 소관 공유재산의 처분대금
2.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3. 기금의 운용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1. 건축비 및 토지매입비
2. 설계비 및 감리비
3. 그 밖에 부대시설비 등 건립에 필요한 경비